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9.

발 의 자 : 민형배 · 김우영 · 이성운
정준호 · 조계원 · 소병훈
이개호 · 최혁진 · 안도걸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
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‘스쿨미투’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.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합니다.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·심각화합니다.

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·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룹니다.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.

이에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. 다만,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

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함으로써
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(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).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9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항(중전의 제14항) 중 “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, 제9항”을 “제8항·제9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, 제10항”으로 한다.

⑨ 교육감은 학생 대상 성희롱·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성희롱·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 (현행과 같음) <u>⑨ 교육감은 학생 대상 성희롱</u> <u>·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</u> <u>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희롱 ·</u> <u>성폭력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</u> <u>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</u> <u>야 한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제8</u> <u>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</u> <u>와 동시에 성희롱 · 성폭력 실태</u> <u>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
<u>⑨ ~ ⑬ (생 략)</u>	<u>⑩ ~ ⑭ (현행 제9항부터 제1</u> <u>3항까지와 같음)</u>
<u>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</u> <u>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</u> <u>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,</u> <u>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</u> <u>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</u> <u>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	<u>⑮ -----</u> <u>-----제8항 · 제9항</u> <u>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, 제</u> <u>10항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.</u>